2019-○○○ 정직 3월 처분 취소 청구

처분 요지	학부모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고, 출전·훈련경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
결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음.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 등 수수 금지)

청 구 인 : ○○○

소속 ○○대학교 직위 교수

피청구인 : ○○대학교총장

피청구인이 2019. 9. 11. 청구인에게 한 정직 3월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9. 9. 26.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 경과

가. 청구인은 2003. 4. 1. ○○대학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2005. 4. 1. 조교수로, 2009. 10. 1. 부교수로, 2015. 3. 1. 교수로 각 승진 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9. 3. 21. 교육부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2019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처분 요구사항(중징계 2건)을 통보받고, 3. 26.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 4. 12. 교육부에 상기 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재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교육부는 2019. 6. 21. 청구인의 재심의신청에 대해 기각을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4. 16. ○○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공무원 피의사건 수사개시를 통보받았다.

마. 피청구인은 2019. 7. 17. 청구인에 대한 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였다.

바. ○○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9. 9. 6. 청구인에 대해 정직 3월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9. 11. 청구인에게 정직 3월 처분[1]을 하였다.

사. 한편 ○○검찰청은 2019. 10. 29. 청구인의 혐의[2]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

1) 당초 징계의결요구 2건 중에 금품수수 및 출전·훈련경비 사적사용에 관한 사항만 1차 징계처분

2) 뇌물수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정을 하였다.

2. 처분사유

가. 청구인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사유를 보면

1) 금품수수에 관한 사항

○○학과(○○부) 교수 ○○○는 직무관련자인 ○○부 학부모 대표 ○○(2학년 ○○의 母)으로부터 2018. 5.경 스승의 날에 즈음하여 미상의 장소에서 현금 700,000원, 2018. 9.경 추석 명절에 즈음하여 미상의 장소에서 현금 500,000원 등 합계 금1,2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

2) 출전·훈련경비 사적 사용에 관한 사항

○○학과 교수 ○○○는 2018. 4. 13. '제2회 전국대학 ○○ 선수권대회'를 마치면서 학교 인근 ○○에서 금270,000원을 정부구매카드로 선결제한 다음 이후 지인들과의 식사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2018. 4.부터 2018. 8.까지 출전 및 훈련 마지막 날 학교 인근 식당에서 총 5차례에 걸쳐 출전·훈련경비 합계 금960,000원을 정부구매카드로 선결제한 다음, 이후 지인들과의 식사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

나. 이에 대한 청구인의 진술 또는 주장

청구인은 상기 징계의결요구 사유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상기 징계혐의에 대하여 소명하였음.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학교당국에 죄송하고, 개인적으로도 부끄럽다고 하였음. 본인의 불찰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지만 본 건은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간식을 대신 챙겨 달라며 돈을 모아서 준 것이었다고 하였음. 앞으로 반성하여 이러한 불상사가 없도록 성실히 노력하겠다고 하였음.

다. 징계위원회의 판단

교육부 감사총괄담당관의 2019년 ○○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처분 통보문서 및 혐의자의 주장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금품등 수수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을 고려하여 그 양정을 정하고, 징계부가금이 요구된 것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상기 법령을 위반하였기에 이와 같은 사항의 징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계부가금을 부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라. 결론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금품등 수수 금지) 등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여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에 의거 징계의결요구 사유에 해당된다.

또한 동 규정 등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에 의거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 3월을 의결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결정에 대하여 전혀 승복할 수 없다. ○○검찰청에서는 교육부의 청구인 관련 뇌물수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2019. 10. 29.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선수 시절, 감독 시절, 현 대학 교수 재직 중에도 다수의 수상으로 국가에 기여한 공로를 볼 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하여 주길 바란다.

4. 판단

가. 징계사유 인정 여부

1) 금품수수에 대하여

가) 청구인이 직무관련자인 ○○부 학부모 대표 ○○으로부터 2018. 5.경 스승의 날에 즈음하여 미상의 장소에서 현금 700,000원, 2018. 9.경 추석 명절에 즈음하여 미상의 장소에서 현금 500,000원 등 합계 금1,2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훈련 시 필요한 간식비, 경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스승의 날 선물 명목이라든지, 추석 명절비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학부모 총무의 수입지출 내역서에는 위 금원이 '훈련·보급비' 항목이 아닌 '접대·급여'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출전 학생들을 위해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및 제5항(금품등 수수 금지)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제1항에서 정한 금액[3]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의 행위가 해당 규정을 위배한 것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및 제5항(금품등 수수 금지)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출전·훈련경비 사적 사용에 대하여

가) 청구인이 2018. 4. 13. '제2회 전국대학 ○○ 선수권대회'를 마치면서 학교 인근 ○○에서 금270,000원을 정부구매카드로 선결제한 사실 등 2018. 4.부터 2018. 8.까지 출전 및 훈련 마지막 날 학교 인근 식당에서 총 5차례에 걸쳐 출전·훈련경비 합계 금960,000원을 정부구매카드로 선결제한 사실은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훈련기간 중 지급되는 식사비용에 대하여 일단 선결제를 해놓고 추후 학생들에게 위 식당을 이용하게 하였을 뿐, 지인들과의 식사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선결제도 '학교당국에서 회계절차상 대회를 마친 후 학교에 복귀할 시 학교 인근 식당에서 반드시 식사를 한 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하여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검찰청의 수사결과 '○○ 선수권대회 참가 학생과 조교의 진술 내용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과 일치해 학생들이 선결제한 식당을 이용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회계처리의 일반원칙)는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회계처리의 목적에 맞는 적정한 방법이 아닌 선결제 방식으로 카드를 사용해 회계질서를 훼손한 점, 정부구매카드 사용과 관련된 대학당국의 안내가 청구인이 어쩔 수 없이 선결제를 했다고 하는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며,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1) 징계권자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검찰청에서 청구인의 세 가지 혐의인 '뇌물수수,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이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3) 1회에 금1,000,000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금3,000,000원을 초과하는 금품

3) 살피건대, ① 청구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②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비위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점(대법원 2000. 6. 5. 선고 98두16613 판결 참조), ③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실의무는 청구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점(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참조), ④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등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 비위유형 중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강등-정직'까지 예정되어 있고, '청렴의무 위반'의 경우 금1,0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파면-해임'까지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정직 3월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모든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과중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